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국가 지정과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61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국가 지정과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3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1.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국가 지정과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충상담이나 통역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국가가 지정하고,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정절차나 평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u>

답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한국어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문화행사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비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업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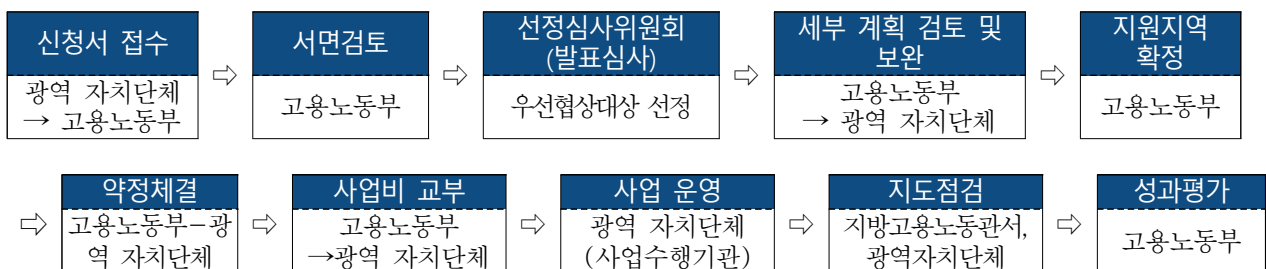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시설과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¹⁾ 같이 갖추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교육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변경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침식 제공을 위한 시설인 쉼터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 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단체 등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가 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공모를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지역특화 교육 등 각종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수행기관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발하여²⁾ 선발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별로 2억원, 총 18억원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³⁾ 실시하고 있음.⁴⁾

1) p.10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 참조

2) < 사업 운영 체계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명칭
1	인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	대구	대구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광주	(사)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4	경남	(사)통도사 자비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	경남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6	경남	(사)희망웅상	양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	충남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8	부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9	전북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 지정, 지원센터 평가와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지원, 지정 절차의 하자나 지정 요건 미달, 평가 결과에 따른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근거와 지원센터의 업무에 외국인근로자 통역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내용 중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과 같이 현행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나 새롭게 규정된 내용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원센터

3) 세부사업인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의 내역사업임

4)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3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금액을 대응 지원함(국가:지방자치단체 5:5로 매칭 지원 사업임)

지정 및 취소, 평가 결과의 사업비 지원 근거, 지정센터 사업 범위 규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센터 업무정지명령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행위가 인·허가나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⁵⁾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원센터를 지원·육성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지원센터를 지정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절차의 하자나 지정요건의 미달 등을 이유로 업무를 정지시키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은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은 행정업무 대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법률에는 지정을 한 자가 지정된 자나 기관에 영업정지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하 생략)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545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 >

구분	시설	장비	
		종류	수량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의자, 책상, 전화기, 컴퓨터	직원 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기기
		기타 사무용 비품	직원 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비품
상담실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의자, 책상, 전화기, 상담일지 등	1명 이상을 상담할 수 있는 사무용 기기
교육장	훈련시설의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3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및 실습실은 훈련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의자, 책상, 컴퓨터, 흑판, 학습교재 등	훈련 직종 및 인원 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무용 기기 및 학습 기자재
쉼터	1실당 6명 이하 수용 (수용인원 1명당 전용 면적 5제곱미터 이상)	가전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각 1대 이상
		침구류	2인용 이상
		취사도구	1인용 이상
		식기도구	2인용 이상
		세면용품	2인용 이상